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고엽제후유증 범위에 고엽제후유의증 포함 등〉

-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957호)
-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004호)

2026. 3.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정 연

목 차

I. 개 요	1
1. 전현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4957호)	1
2. 구자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5004호)	2
II. 검토의견	4
1. 고엽제후유증 범위에 고엽제후유의증 포함(전현희·구자근의원안) ..	4
2.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고궁 등 이용지원(구자근의원안)	14
※ 참고자료	18

I. 개 요

1. 전현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4957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전현희의원 등 117인
- (2) 제 안 일 : 2025. 12. 5.
- (3) 회 부 일 : 2025. 12. 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월남전에 참전하였거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직한 자 등으로서 고엽제에 노출되어 질병을 앓는 사람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구분하여 보상 및 예우 등에 차이를 두고 있음.

그러나 두 환자군 모두 월남전 참전 및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의 복무 등으로 인해 고엽제에 노출되어 질병과 생활상의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위의 차이로 인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같은 예우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사망 시 배우자에게 보상이 승계되지 않아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는 등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고엽제후유의증을

포함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동일한 보상과 지원을 받게 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명예를 회복하며 국가 보훈의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것임(안 제명 및 제1조 등).

2. 구자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5004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구자근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5. 12. 8.
- (3) 회 부 일 : 2025. 12. 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는 사람을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구분하여 보상 및 예우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모두 월남전 참전 및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의 복무 등으로 인해 고엽제에 노출되어 질병과 생활상의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위의 차이로 인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같은 예우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해서는 의료지원, 수당지급 및 심리적 재활만이 실시되고 있어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위해서는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엽제후유의증으로 판정하는 질병을 현행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에 포함시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동일한 보상과 지원을 받게 하고,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는 고궁 등 문화시설 이용지원을 실시하여 이들의 사회생활을 지원함으로써 고엽제로 인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희생에 걸맞는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명 및 제1조 등)..

II. 검토의견

1. 고엽제후유증 범위에 고엽제후유의증 포함(전현희·구자근의원안)

- 개정안은 고엽제후유증 범위에 고엽제후유의증을 포함하여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동일한 보상과 지원을 받게 하려는 것임(안 제명, 제1조 등).

현행	전현희·구자근의원안
<u>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u>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枯葉劑後遺症患者)에 대한 보상과 <u>고엽제후유의증환자(枯葉劑後遺疑症患者)</u> 및 <u>고엽제후유증</u> 2세환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疫學調査) 및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u>고엽제후유증</u> ----- -----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현행	전현회·구자근의원안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 등으로서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한다. 4. (생략)	<삭제> 4. (현행과 같음) ※ 그 외 고엽제후유증과 고엽제후유증을 통합하는 내용의 개정사항 신구조문대비표 생략

□ 현행법은 월남전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전역한 자 등으로서 비호지킨임파선암, 연조직육종암 등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24개 질병¹⁾을 얻은 경우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일광과민성피부염, 심상성건선 등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17개 질병²⁾을 얻은 경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인정하고 있음.

○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하는 질병의 경우 고엽제와의 관련성이

-
- 1) 고엽제후유증(24개): 비호지킨임파선암, 연조직육종암, 염소성여드름, 말초신경병,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호지킨병, 폐암, 후두암, 기관암, 다발성골수종, 전립선암, 버거병, 당뇨병(선천성 제외), B-세포형 만성 백혈병(만성림프성백혈병과 털세포백혈병 포함), 만성골수성백혈병, 파킨슨병(이차성 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제외), 허혈성 심장질환, AL 아밀로이드증, 침샘암, 담낭암(담도암 포함), 갑상샘 기능저하증, 다발성경화증, 방광암,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 2) 고엽제후유의증(17개): 일광과민성피부염, 심상성건선, 지루성피부염, 만성담마진, 건성습진, 중추신경장애, 뇌경색증, 다발성신경마비, 근위축성신경축색경화증, 근질환, 악성종양, 간질환, 고혈압, 뇌출혈, 동맥경화증, 무혈성괴사증, 고지혈증

입증³⁾된 질병으로서 고엽제후유증환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⁴⁾하여 그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하고 있음.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는 질병이 고엽제와의 의학적·과학적 상관성이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월남전 참전자 등의 국가에 대한 공헌을 참작하여 보훈정책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음⁵⁾.

< 고엽제 질병 구분(고엽제법 제5조) >

구 분	고엽제 질병 인정기준	인정 질병
고엽제 후유증	고엽제 노출과 질병간 의·과학적 상관성 규명(○) * 미국 연구 결과 및 국내·외 역학조사 결과를 반영	방광암, 폐암 등 24개 질병
고엽제 후유의증	고엽제 노출과 질병간 관련성 추정, 의·과학적 상관성 규명(X) * '93년 법제정 당시, 보훈정책적 차원에서 규정한 질병	고혈압 등 17개 질병

※ 미국은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21개 인정,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은 불인정

자료: 국가보훈부

3) 미국 연구 결과 및 국내외에서 실시한 역학조사 결과 고엽제와의 상관성이 의학적·과학적으로 규명된 질병으로, 국내 역학조사는 총 6회 실시되었으며 2024년에는 제6차 역학조사(2019년~2021년) 결과를 토대로 과학성평가 및 고엽제자문협의회 등을 거쳐 ‘갑상샘기능저하증, 다발성경화증, 방광암,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4개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인정된 바 있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 중 그 장애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으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으로 보고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한다.

5) 1993년 현행법 제정 당시 고엽제와 질병 간의 상관성이 규명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진료 혜택만이라도 주기 위하여 1984년 월남전 참전 미군과 고엽제 제조회사 간의 소송에서 고엽제피해자들이 주장한 19개 질병(켄킨스보고서에 근거)을 중심으로 고엽제후유의증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 후 1996년부터 장애수준에 따른 수당 지급, 교육·취업지원 등으로 확대되었음(국가보훈처, 「보훈 60년사」, 2021. 8., pp.202~205)

□ 개정안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제도를 폐지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대상 질병을 고엽제후유증환자 대상 질병으로 통합하여 동일한 보상과 지원을 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예우와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고엽제 역학조사 결과 후유증 대상 질병 확대 추세⁶⁾ 및 역학조사 기간의 장기성 등을 고려할 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개정안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전환되고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공상군경으로 인정하여 보상금 지급, 보상금 유족 승계 등의 예우를 받게 됨.

<고엽제환자 보상·지원 현황 비교>

구 분	고엽제후유증	고엽제후유의증
보상금·수당	- 상이등급에 따라 매월 708~4,058천원 보상금 지급 * 6급 이상 유족 보상금 승계	-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626~1,296천원 수당 지급 * 유족 수당 승계(X)
의료지원	- 본인 국비 진료, 배우자 감면(60%)	- 본인 국비 진료, 배우자 감면(X)
취업/교육	- 가점 취업 - 수업료 면제, 학습보조비 지급 등	좌 동
대부	- 주택·아파트·사업·생활안정 대부지원	- 대부 지원(X)
수송시설	- 열차, 선박, 항공, 지하철 등 이용 지원	- 수송시설 지원(X)

자료: 국가보훈부

6) 법 제정 당시 후유증 질병 4개, 후유의증 질병 17개로 규정되었으나, 지속적인 역학조사를 통해 후유증 질병이 추가되거나 후유의증 질병이 후유증으로 전환됨으로써, 현재 기준 후유증 질병 24개, 후유의증 질병 17개임.

□ 다만, 개정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현행법의 제정 배경, 보훈보상체계, 일반 상이자와의 형평성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1993년 현행법 제정 당시 고엽제 노출과 질병간의 의학적·과학적 상관성 규명 여부에 따라 고엽제후유증과 고엽제후유의증을 구분하여⁷⁾, 고엽제후유의증은 고엽제와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미국에서도 보상 등의 대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으나, 역학조사를 통하여 인과관계가 규명될 때까지 한시적⁸⁾으로 진료 지원을 할 필요성에 따라 도입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은 전투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이와 질병의 경우, 직무수행 등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인한 상이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을 국가유공자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⁹⁾을 고려할 때, 고엽제

7) 제정 이유: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을 행하고,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의심되는 질병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진료를 행하도록 하는 동시에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등에 관한 역학조사 및 연구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8) 법률 제5479호 枯葉劑後遺疑症患者支援등에관한法律改正法律 부칙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1993년 제정 당시 1997년까지 유효한 한시법으로 제정되었으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의 필요성, 역학조사를 통한 고엽제후유증 질병 구명(究明) 필요성 등의 사유로 유효기간을 6차례에 걸쳐 5년 단위로 연장하였음.)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 관련) 2.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노출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상
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를 국가유공자로 포함하는 것이 현행
보훈보상체계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셋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경우, 상이와 직무수행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
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 대상에서 제외된 다른 상이자와의 관계
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음.
- 넷째,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받게 되면 당사
자 및 유족의 보상금 신규지급 등에 따른 재정소요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¹⁰⁾.

□ 개정안을 입법하는 경우 보완이 필요한 사항 및 체계 자구 관련

2-1.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및 직무수행을 위
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
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나.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
로 인정된 질병

다. 상당한 기간 동안 심해에서의 해난구조·잠수작업, 감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방지 등 생
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던 중 그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
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라. 화학물질·발암물질·감염병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이에 준하는 유해환경에서의 직무수행(이와 관
련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중 이들 유해물질 또는 유해환경에 상당한 기간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노
출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 10) 국회예산정책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은 3단계(고도/중증도/경도)
이고,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증환자)의 상이등급은 11단계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별, 질병별
등급 전환을 위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상이등급별 고엽제후유증환자 인원을 예측할 수 없다고 설명함.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개정안은 고엽제후유의증 범위에 고엽제후유의증을 포함하면서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 규정(제5조제2항)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현행법에 따라 받던 지원을 삭제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을 여전히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안 제4조제7항에서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 규정(제5조제2항)을 인용하고 있으므로¹¹⁾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 교육지원(제7조의5)¹²⁾과 취업지원(제7조의9)¹³⁾을 삭제하고 있으나

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4조(적용 대상자의 결정·등록 등)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서류 확인 결과 또는 제3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통보 결과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검진 결과 또는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출된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서를 토대로 신청인이 이 법의 적용 대상자인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서를 제출한 자 중 해당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의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 대상자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5(교육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1.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녀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1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취업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1.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

3. 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

안 제4조의3제2항제2호와 안 제28조제1항에서 해당 조를 인용하고 있으므로¹⁴⁾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개정안 제4조의2는 신상 변동 신고 대상에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삭제하여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만 그 대상이 되는데, 신고 사유 중 제1항제8호¹⁵⁾는 월남전 참전 기록이나 군 기록 등의 변경 등에 관한 것으로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와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개정안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만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데, 이 법 시행 당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한 경

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③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3항, 제30조,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4항 중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1급·2급·3급·4급 또는 5급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본다.

1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치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4조의3(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의 발생시기는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제7조의3에 따른 수당, 제7조의5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을 권리는 그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제28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제7조의5 및 제7조의9에 따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한다.

1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치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4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 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8. 월남전 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과조치도 추가할 필요가 있고, 안 제6조제4항¹⁶⁾은 삭제되었음에도 안 부칙 제3조의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제6조제4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¹⁷⁾.

□ 국가보훈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고엽제 질병 구분체계 및 경과, 국가유공자법과의 관계를 볼 때 후유증과 후유의증을 일괄 통합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한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고엽제후유증과 고엽제후유의증을

16)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밝혀진 경우 최초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소급하여 보상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개정안은 고엽제후유의증 관련 조문 정리를 위하여 해당 조문을 삭제함.

17) 부칙 수정의견은 다음과 같음.

개 정 안	수정의견
부 칙	부 칙
제2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에 해당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 중 제5조제1항제25호부터 제41호까지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으로 본다.	제2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에 따른 질병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제5조제1항제25호부터 제41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신청한 자로서 이 법 시행 후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가 된 경우에는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한다.	제3조(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신청한 자로서 이 법 시행 후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가 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한다.

통합하는데 동의하는 입장임.

- 舊 기획재정부(現 기획예산처)는 ‘제7차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역학조사 결과에 대한 타당성조사, 과학성 평가결과 등을 바탕으로 질병 상관성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후 검토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2.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고궁 등 이용지원(구자근의원안)

□ 개정안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고궁 등 국공립 시설의 이용료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2호).

현행	구자근의원안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 ----- ----- ----- ----- ----- -----.
1.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1. (현행과 같음)
2.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u>고엽제후유의증환자</u>	2. ----- ----- <u>고엽제후유증 2세환자</u> ※ 개정안은 고엽제후유증과 고엽제후유의증을 통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미해당자¹⁸⁾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공원, 박물관·미술관, 수목원 등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공연장 및 공공체육시설은 50% 할인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음.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 대비)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 관련[별표 3]

- 개정안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도 고궁 등의 이용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문화·여가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는 후유증 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이미 사망한 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¹⁹⁾ 중 후유증 2세 질병을

18)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해당자는 국가유공자로서 지원을 받음.

19) 월남전에 참전한 날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날이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잉태되어 출생한 자녀

얻은 자로, 미국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1998년 1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질병에 척추이분증(은폐성 제외)을 인정하고, 2000년 7월 말초신경병과 하지마비척추병변을 추가²⁰⁾하여 지원하고 있음.

-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은 대상자의 국가에 대한 공헌과 본인의 희생정도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는 것인 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는 직접 참전하지는 않았으나 고엽제환자와 유전적 관계가 있는 질병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희생에 대한 진료와 보상 실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현행법 제정 당시에는 고엽제 2세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었는데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 중 척추이분증을 얻은 자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고, 이후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을 얻은 자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입법의 변천과정에 비추어 볼 때, 고엽제 2세들에 대한 지원 여부는 제도의 단계적인 개선에 해당²¹⁾하므로, 고궁 등의 이용지원과 같은 지원 범위의 확대 역시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입법정책적 사안인 것으로 보임.

- 또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은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 부담 증가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에 한정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인원은 258명(2

20) 말초신경병 및 하지마비척추병변은 의학적으로 고엽제 2세환자의 질병으로 구명되지는 않았으나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추가함.(제209회국회 제3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회의록, 2000.1.7., p.4)

21) 현재 2014. 4. 24. 2011헌바228

026년 2월 기준)으로 수입 감소 규모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국가보훈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고궁 등 이용지원 대상을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예우 및 지원 강화 측면에서 동의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07

참고 1

고엽제 질병 인정 현황 (미국과 비교)

구 분	우리나라	미 국
후유증	24개 질병 비호지킨림파선암 여조직유종암 염소성여드름 말초신경병(만성포함)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호지킨병 폐암 후두암 기관암 다발성골수종 전립선암 버거병 당뇨병(선천성 제외) B-세포형 만성백혈병 (만성림프성백혈병, 털세포백혈병 포함) 만성골수성백혈병 파킨슨병(이차성 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제외) 허혈성심장질환 AL 아밀로이드증 침샘암 담낭암(담도암 포함) 갑상샘기능저하증 다발성경화증 방광암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21개 질병 비호지킨림파선암 여조직유종암 염소성여드름 말초신경병(만성제외)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호지킨병 폐암 후두암 기관암 다발성골수종 전립선암 제2형(성인형)당뇨병 모든 만성B-세포백혈병 (만성림프성백혈병, 털세포백혈병 포함) 파킨슨병 허혈성심장질환 AL 아밀로이드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방광암 파킨슨증 고혈압 ('22.8월) 단세포군감마글로블린병증(MGUS) ('22.8월)
후유의증	17개 질병 일광과민성피부염, 심상성건선, 지루성피부염 만성담마진, 건성습진 중추신경장애 뇌경색증 다발성신경마비, 근위축성신경축색경화증 근질환 악성종양 간질환 고혈압, 뇌출혈, 동맥경화증 무혈성괴사증, 고지혈증	(불인정)
후유증 2세질병	3개 질병 척추이분증(은폐성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1개 질병 척추이분증

자료: 국가보훈부

참고 2

고엽제 역학조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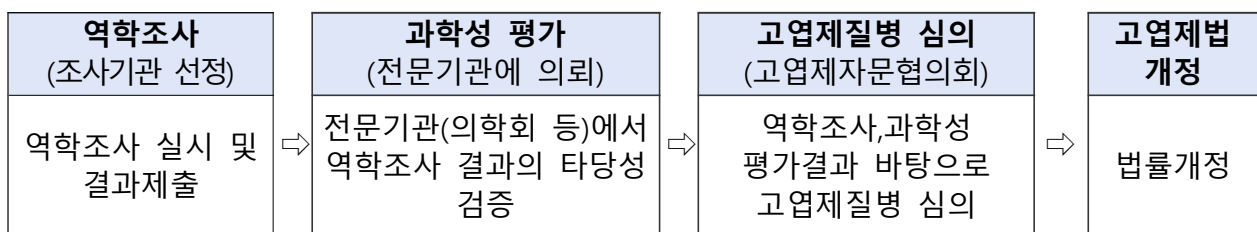
○ 1~7차 고엽제 역학조사 현황

역학조사	연구기간	연구기관	연구비용 (백만원)	연구 결과 (인정 질병)
1차	'95~'96	서울대	198	○ 고엽제후유증 : 버거병 ○ 고엽제후유의증 : 뇌경색, 건성습진, 무혈성괴사증
2차	'98~'01	연세대	477	○ 추가 인정 질병 없음
3차	'03~'06	연세대	687	○ 고엽제후유증 : 만성골수성백혈병
4차	'09~'12	관동대	995	○ 추가 인정 질병 없음
5차	'13~'16	가톨릭 관동대	1,300	○ 고엽제후유증 : 침샘암, 담낭암(담도암 포함)
6차	'19~'21	가천대	820	○ 고엽제후유증 : 갑상샘기능저하증, 다발성경화증, 방광암,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7차	'23~'26	가천대	802	○ 연구 진행 중

○ 국내 역학조사 결과를 반영한 고엽제 질병 전환 내역(총 8개 질병)

1차('95.4.~'96.10.)	버거병	3차('03.7.~'06.9.)	만성골수성백혈병
5차('13.5.~'16.10.)	침샘암, 담낭암(담도암 포함)	6차('19.1.~'21.12.)	갑상샘기능저하증, 방광암 다발성경화증, 비전형파킨슨증

○ 고엽제후유의증 → 후유증 전환 절차



자료: 국가보훈부

참고 3

고엽제 환자 등록 현황 [2026.2월 기준]

□ 총 괄

(단위: 명)

구 분	계	후유증	후유의증	후유증2세
계	130,886	45,589	85,039	258
등급자	79,499	33,139	46,161	199
등급미달자	51,387	12,450	38,878	59

○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

(단위: 명)

구 분	본 인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후유증	33,139	23	88	1,471	195	3,035	19,949	8,378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장애등급)

(단위: 명)

구 분	소계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
후유의증	46,161	9,335	8,430	28,396
후유증2세	199	12	54	133

자료: 국가보훈부

참고 4

고엽제 환자 보상·지원 현황

구 분	고엽제후유증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2세
보상금·수당	- 상이등급에 따라 매월 708~4,058천원 지급 * 7급은 유족 보상금 승계x	-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626~1,296천원 지급 ★ 유족 수당 승계(X)	-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1,440~2,308천원 지급 ★ 유족 수당 승계(X)
의료지원	- 본인 국비 진료, 배우자 감면(60%)	- 본인 국비 진료, 배우자 감면(x)	- 본인 국비 진료
취업/교육	- 가점 취업 - 수업료 면제, 학습보조비 지급 등	좌 동	*고엽제후유증 자녀로 수혜가능
대부	- 주택·아파트·사업·생활안정 대부지원	- 대부 지원(X)	*고엽제후유증 자녀로 선순위 유족인 경우
수송시설	- 열차, 선박, 항공, 지하철 등 이용 지원	- 수송시설 지원(X)	좌 동

자료: 국가보훈부